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15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3. 9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조직개편이후 자치단체마다 조직운용 관련조례가 다양하게 운용되므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
- 각 지방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

주요골자

- 정원조례 근거중 “지방자치법 제103조” 추가
- 소속기관을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로 구분

개정근거

- 경남도 행정 12200 ~ 42 ('98. 10. 20) 조례·규칙모델표준안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이 조례는 다음에 “지방자치법 제103조 및”을 삽입하고, 거창군 다음에 “(이하 ”군“ 이라한다)”를 삽입한다.

제2조 중 “거창군”을 “군”으로 한다.

제3조 조명중 “(직급별 정원의 규정)”을 “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)”으로 하고 “군의 본청, 소속기관 및 읍면에”를 “본청,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<u>조례</u>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거창군</u>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이 <u>조례</u>는 <u>지방자치법 제103조</u>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</u>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<u>거창군</u>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행기관의 정원 : 589명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 <hr style="width: 30%; margin: 10px auto;"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계 : 601명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<u>군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행기관의 정원 : 589명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 <hr style="width: 30%; margin: 10px auto;"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계 : 601명</p>
<p>제3조 (<u>직급별 정원의 규정</u>) <u>군</u>의 <u>본청, 소속기관 및 읍면에</u>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3조 (<u>정원관리기관별 · 직급별 정원</u>) <u>본청,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</u>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